

214

각각 인상 예산책정의 변동이 있어 부득히 동 요강을 별첨안
과 같이 변경 실정 운영조치 재결을 바랍니다

(제 2 안)

수신 수신처참조

재 목 동 건

1. 서울특별시립 후생식당 설치조례 제1호의 규정이
의거 시립후생식당 운영요강을 실정운영하고 인건비 증반 1인
급식정원 및 취사부 인원이 증원되고 또한 급식가격 1기당 8
원을 12원으로 부식비 3원을 5원으로 각각 인상됨에 따라 동
요강을 별첨과 같이 변경운영케 되었으니 앞으로 동요강을 준
수하여 식당운영 및 세위에 차질이 인도록 할것

2. 부식비 인상으로 인한 부식 및 조미료 사용에 있어
서도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질적향상과 종전에 비해 개선된 운
영을 촉구하니 이점유념할것

3. 변경된 시립후생식당 운영요강은 1970. 1.15부터
시행할것

첨부: 서울특별시립후생식당운영요강 사본 1부. 금

부신처 내청 4.5.9 이사. 양대원, 양동욱, 양영호



시립후생식당운영요강(변경안)

1. 목적

국민영세행상인 및 영세부동근고자 또는 국민영세민으로 최저금
 임가로 주식(국수 1기식)을 제공하여 이들의 자활향상 및 생활
 안정과 사회복지증진을 목적 ~~추진한다~~

2. 운영 방법

- 가. 본식당은 구청장 및 시립사업소장 책임하에 운영한다
- 나. 본식당은 매일 10시에 개집한다
- 다. 1일 급식정원은 다음과 같다

(1) 1일 급식정원

구분	식당별	성동	성북	영등포	남대문	영등포	기타
1일 급식 정원		1300인	500인	300인	500인	300인	1,500인

시립후생식당	
구청장	김영환
사업소장	김영환
주식	김영환
계	김영환
비고	김영환

- 라. 식사는 1인 1기 소맥분(긴면) 300그램으로 한다
- 마. 부식비는 1인 1기 5원으로 한다
- 바. 매식자로부터 징수하는 가격은 1기당 12원으로 한다
- 사. 식사에 필요한 주부식 및 기타 운영비는 자가 부담한다

3. 식대 징수 방법

- 가. 식당운영에서 징수한 ~~세금~~ ^{세금}은 당일 17시까지 별지 서식과 납부
 서에 의하여 당해구역 사회과장(사업소장) 책임하에 시공고에
 불입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시는 기일을 연장할수있다
- 나. 공휴일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4. 운영의 경미

- 가. 주식용 양곡비 부식비 및 기타 운영비는 구청장 및 사업소장
 에게 영달 경미케 한다
- 나. 식당운영 및 식대징수를 위하여 식당 책임직원을 정규직원으
 로 지정하여 담임케 한다

2793

215

다. 식당 담임직원은 식당운영사항을 구청장에게 일보로서 보고하고 구청장 및 사업소장은 이를 월보 운영사항을 시장에게 월 5일까지 보고한다

5. 종사원(커사부) 사용

(1) 종사원 정원

식당별 구분	정동	성북	영등포	남대문 합숙소	영등포 합숙소	계
커사부	2	2	2	2	2	10

6. 이 요강은 1970. 1. 15부터 시행한다.

1970. 1. 18

서울특별시

시립 푸식당 운영 통장 (경정)

1. 목적

국민영세행상인 및 영세부동근로자 또는 국민영세민으로 하여금
임가교 주침(국수 1기식)을 제공하여 이들의 자활 향상 및 생활인
정과 사회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2. 운영방법

가. 본식당은 구청장 및 시립사업소장 책임하여 운영한다

나. 본식당은 매일 10시에 개장한다

다. 1일 급식정원은 다음과 같다

(1) 1일 급식정원

식당별	상동	상북	시대	마포	용산	영등포	동대문	남대문	7
구분	상동	상북	시대	마포	용산	영등포	동대문	남대문	상숙소
급식정원	800인	1400	400	400	150	300	150	400	3,000

라. 식사는 1인 1식 소맥분(간면) 300그램으로 한다

마. 부식비는 1인 1식 3원으로 한다

바. 매식자로부터 징수하는 가격은 1기당 8원으로 한다

사. 식사에 필요한 주부식 및 기타 운영비는 시가 부담으로 한다

3. 식대 징수방법

가. 식당운영에서 징수한 대금은 당일 17시까지 별지 서식 즉 날부
서에 의하여 당해구위 사회과장 책임하여 시금고에 불입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시는 1일을 연장할수 있다

나. 공유일은 개산하지 아니한다

4. 운영비 정리

가. 주식용 ~~양(국수, 소맥분) 및 간면)은 시에서 일괄 구입해 정하고~~
부식비 및 기타운영비는 구청장에게 영달 정리해 한다

나. 식당운영 및 식대징수를 위하여 식당 책임직원을 정규직원으로
지정하여 당임계한다

다. 식당 탐입직원은 식당운영사항을 (구청장에게) 일보로써 보고
하고 구청장은 10일간식의 순보로 운영사항을 시장에게 보고
한다

5. 종사원(고용원) 사용

가. 종사원 장원을 다음과 같이 작한다

(1) 고용원 장원표

식당	성동	성북	시대문	마포	용산	병등포	종대문	남대문
구분	남여	남여	남여	남여	남여	남여	남여	남여
인사	2	2 2 4	2 4 6	2 2 4 4	1	1 2 3	1	1 1 2
							총계	총인원

6. 이요강은 1968. 1. 1.부터 시행한다

1967. 12. 29

시 용 록 별 지 장

2796

218

228